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5. 7. 2.(목) 17:15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7시 15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도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3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32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제32차 서면회의 결과,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5-33-15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치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고, 그간의 추진경과는 지난 4월 3일 위원회에 개정안을 보고 드린바 있으며, 그 이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내용입니다만 지난 4월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2쪽 하단부터 3쪽, 그다음에 4쪽의 상단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위원회에 보고 드린 이후에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보고 드린 이후에, 특히 입법예고, 관련된 업계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서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모아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신설되었는데, 그중에 개인별로 통보하는 기준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지정한 횟수나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니라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동의한 횟수나 기간으로 모아서 통보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법제처 심사와 그다음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4일 동법 시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이미 충분한 논의를 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수정된 부분이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지정함’이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동의함’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해서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전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전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사유는 201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고시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과는 지난 6월 17일, 19일에 중앙지상파 4사, 종편·보도PP 등을 대상으로 분담금 징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15년 6월 22일부터 「방송발전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위성·IPTV사업자의 사업초기 3년간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일정 광고매출액 이하의 소규모·적자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시행령 등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징수제도의 논리적 체계성·예측가능성과 사업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징수율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따른 징수율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종편·보도PP는 여타 유료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되 단계적으로 징수율을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징수율에 있어서는 광고매출 축소 등 방송시장의 경영상황을 반영하고 개정된 법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방송사별 징수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상파DMB를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징수율은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방송광고매출액별로 징수율 구간을 설정하고 이러한 징수율 구간 내에서 감경사항을 고려하기 전인 기본징수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밑에 참고표시 보시면 특별히 기본징수율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방송시장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반영하고 변경된 제도가 시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종전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납부 사업자가 없게 하기 위해 소수점 아래 값을 0.3%로 일괄적으로 결정해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0.3, 1.3, 5.3까지의 기본징수율을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기본징수율에 감경 요인을

적용하여 산정된 최종 징수율을 고시(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감경요인은 KBS·EBS는 공공성 측면을 감안하여 기본징수율의 1/3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직전연도 당기순손실 발생 사업자에 대하여 1/2의 범위 내에서 추가 감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징수율 결정입니다. 3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제1안>으로 징수율 0.5%를 하되, 즉시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OBS 등의 경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고, 종편·보도PP의 사회적 영향력이 여타 유료방송에 비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징수하되, 다만 과거 SO, 위성방송에 대한 최초 분담금 징수 시 징수율 1%를 적용했던 사례, 그리고 1% 적용 시 해당 사업자군이 흑자 전환 상태였던 점, 그리고 종편·보도PP가 전체적으로 여전히 적자임을 감안하여 징수율을 0.5%로 설정하였습니다. <제2-1안>은 징수율을 0.5%로 하되 '16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제1안>과 같이 징수율을 0.5%로 정하되 적자상태에 있는 해당 사업자군에 대해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부칙 규정에 '14년 매출분에 대해서는 종전 징수율을 적용하고 '15년 방송광고매출액 대상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1년 후부터 징수하는 방안입니다. <제2-2안>은 징수율을 0.5%로 하되, '18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과거 SO나 위성, 現 IPTV, 지상파 DMB의 경우 신규진입에 따른 적자시 분담금을 면제했던 사례 등을 고려하여 부칙 규정에 '14년부터 '16년까지 매출분에 대해서는 종전 징수율을 적용하고 '17년 방송광고매출액 대상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3년 후부터 징수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 분담금 과·오납 환급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당초에 분담금 과·오납 환급 관련 규정이 고시에 있었는데 이는 「국고금관리법」을 따르도록 한 법제처 의견을 존중해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보고된 안건이 접수가 되면 기재부 부담금 심의 및 행정예고 약 20일간, 그다음에 국조실 규제위 규제 심사를 거치고 8월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보고안건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에서 고르면 되는 것이지요?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4페이지 안에서 채택하되 비율을 더 상향해서 <제1안> 징수율, 지금 0.5%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사업자들의 최초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비율인 1%로 하고 즉시 시행하는 것을 수정해서 제안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1안>에 'OBS 등의 경우 적자임에도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 말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OBS를 예로 들었는데 지상파이고, 종편 같은 매체와는 그 특성이 다릅니다. 주파수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거기에서 인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1안>의 또 다른 안으로 징수율을 1%로 하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제2-1안>에 '<제1안>과 같이' 이것은 필요 없고 그냥 '징수율을 0.5%로 하되'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저도 이 중에서 고삼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외한 징수율 1%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안으로 제안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제2-1안> 징수율은 0.5%로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분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제3기 출범 이후에 관련된 법률도 개정하고, 또 최근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쪽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 개정된 법제도에 맞게 과거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기존의 사업자, 그리고 최근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 간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종의 정부가 하는 부담행위인데 징수대상 사업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야겠다, 그리고 또 지금 방송시장이 광고매출도 계속 줄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앞에 지상파에 대한 징수율을 정할 때도 그런 작금의 방송시장 상황이 고려됐듯이 종편과 보도PP인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감안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결국 저희가 작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급적용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일단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2-1안> 징수율은 0.5%로 하고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세 분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기주 위원님께서 입장의 근거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왜 <제1안>을...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고삼석 위원님께서 먼저 근거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제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상파, 종편PP, 보도PP 사업자에 대해서 방송광고매출액의 6/100의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PP 그리고 보도PP 사업자들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이 법에서 정한 원칙이지요? 맞지요?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개정 전 시행령을 보면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위성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는 3년간 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편PP와 보도PP가 적자 사업자라는 이유로 해서 면제해 왔는데, 개정 이후 규정에 종편PP와 보도PP가 면제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법이나 시행령에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명시적인 면제규정보다는 법에 차등적인 징수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거대통신기업의 자회사인 IPTV사업자의 경우 가입자 1,000만명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라는 이유로 계속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정부의 승인사업자인 종편PP의 경우 공적채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신생사업자라는 이유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유예 등 여러 가지 특혜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러한 문제제기된 것은 아시지요?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문제제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 것입니다. 즉, 기존의 관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미래부의 경우 금년도부터 IPTV 사업자에 대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할 예정이지요?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현재 진행되고 있지요?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예.

○ 신영규 재정팀장

- 지금 미래부 같은 경우에는 담당국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그럴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 방향, 그리고 오늘 제도개선 방향을 보면 분담금 징수나 면제규정의 논리적 체계성 정비, 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1차적으로 시행령 개정작업을 했었고 그 시행령이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러한 시행령 제도개선의 취지로 보면 오늘도 <제2안>으로 나와 있는 내년부터 부과하자거나 아니면 몇 년 뒤에 부과하자는 것은 이런 입법취지를 몰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특징은 분담금 징수율 결정시의 고려사항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방송운영의 공공성, 사업자의 재정상태 이 2가지를 고려했는데 개정된 시행령에 보면 사업자의 수익 규모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 시행령은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는 사업초기 3년간 면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지적한 것이지요?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개정 시행령을 보면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대상은 2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제13조에 의하면 첫째,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해당연도 분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면제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재무상태표상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 사업자에 대한 면제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종편이나 보도PP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면제대상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니지요?

○ 신영규 재정팀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어느 경우를 적용하더라도, 시행령의 입법 취지나 지금 시행령에 마련된 범조문을 보면 종편PP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차 강조하지만 시행령을 개정 한 것은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특정 사업자에 대해 징수를 면제하는 그런 것들을 못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면제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해서 가급적 많은 사업자에 대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자 이런 취지가 바로 시행령 개정의 입법취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 종편PP와 보도PP에 대해서 개정된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저도 징수해야 하고 또 1%로 금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방통위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회 미방위의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저는 그 과정에서 금년부터는 징수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합의, 의결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 흐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년간 면제해 줬고 작년 초에 재승인을 받았으면 그 해부터는 방발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또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변형된 안이 나왔습니다. 내년 이후 또는 이다음 재승인 심사 3년간 유예하고 그 이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방통위 내부에서도 그동안 많은, 정말 소모적인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액수도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수억 정도이고, 수백 억의 광고매출을 올리는 종편들이 물론 적자도 100억원 이상 납니다만 거기에 몇 억 정도의 분담금을 내는 문제인데, 또 이 결정이 안 됨으로써 바깥의 시민단체와 학계와 전문가그룹들이 많은 논란을, 그동안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비판하고 지적해 왔고 또 국회 정치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사회의 기회비용으로 쳐도 정말 종편들이 간단히 부담해 버리면 될 그 액수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년에 바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편, 다시 이것으로 논의하기도 참 괴로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보고 의안으로 왔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편은 정말 여러 가지 정부의 특혜와 또 거대 언론사, 거대 미디어그룹의 일원으로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정말 급성장해 왔습니다. 첫째는 종편 4사의 시청점

유율은 11.8%입니다. 지상파 SBS 플러스 지역민방 네트워크사 다 합해도 11.297%입니다. 종편 4사가 지상파들 네트워크사를 이미 능가했습니다. 두 번째, 광고매출의 급성장입니다. 2014년 작년 한 해 종편4사의 광고매출액이 얼마이지요? 4,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방송계가 다 어렵습니다만, 지상파는 정말 경영난에 있는데, 매출이 2014년도에 2.8%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인상률에 비할 때 정말 매우 어렵고 마이너스나 다를 바 없습니다. 홈쇼핑,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일컬어지던 돈 벌던 홈쇼핑도 2014년도에 1% 성장한데 불과합니다. 종편 4사는 어떻습니까? 31.2%, 광고매출 외형이 급성장했습니다. 어느 방송그룹, 어느 방송사보다도 급성장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적자액이 얼마다? 이것은 손익회계, 그것은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고 희망이 있다고 할까,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 갈만한 충분한 기반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점유율과 사업 매출이 증가한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생 언론사, 방송사들에게 부여해 준 특혜들을 종편들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편 4사는 신생방송 언론사가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영향력이 매우 막강한 거대 신문사들이 경영하는, 대주주들이 다 거대 신문사들인 언론사, 미디어그룹의 일원입니다. 그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된 10번대에 채널번호를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6번, 7번, 9번, 11번, 4개 채널이 지상파지요. 그다음에 13번, 15번, 17번, 19번 이것이 종편의 채널번호입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준 특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거대 언론사의 일원으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준 특혜입니다. 의무편성입니다. 이것은 정부 특혜입니다. 방송법 제70조에 의무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대통령령에 종편을 의무편성으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특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급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혜를 받아 급성장했다면 그에 합당한 의무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번번이 이야기했지만 국민 세금이나 다른 방송사업자들이 내놓은 그 돈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의 방송 인프라를 이용해서 방송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방송광고매출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담금을 당연히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에 가게를 열거나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하는 분들도 시장관리비, 청소비는 내는 것입니다. 그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비입니다. 아파트 거주자도 자기 사업이 적자가 났어도 아파트 관리비는 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송사업을 하기 때문에 회비, 분담금 같은 것입니다. 저는 적자, 흑자와 직접 관련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당국으로서 이렇게 고려요인은 되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국회와 시민단체와 또 학계에서 많은 토론회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 이제는 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저는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재론되는 것은 이상합니다. 또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한 푼도 안 내는 종편이 그동안 방발기금 지원은 얼마나 받아왔습니까? 2013년도 종편 4사에 대한 방발 지원금이 얼마나 됐지요? 과장님!

○ 신영규 재정팀장

- 2014년의 경우에 11억원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2013년에 15억 6,800만원입니다. 종편 4사 평균 4억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제일 높게는 6억 4,000만원에서부터 제일 적게는 2억 2,000만원까지 가져갔습니다. 자신들이 한 푼도 안내는 방탈기금을 그렇게 수혜받은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권리와 의무에, 이게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2014년도에는 11억 1,900만원입니다. 가장 많이는 4억원이 넘게, 적게는 2억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도리도, 또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종편에 압박을 가하고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종편 쪽 입장에서조차 얼마 안 되는 분담금을 내고 더 이상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떳떳하게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당국에서도 그런 배려를 해 줄 때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정부청사 앞에 OBS 사원들이 앉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켓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편은 장자, OBS는 버린 자식이나?'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지상파그룹이라고 해서 OBS는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고 자본잠식률이 95%인데 방탈기금은 징수하고 있고, 종편은 여러 가지 특혜와 급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안 걷고 있고, 이것이 형평성에, 사회정의에 맞는 것입니까? 사회적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생명으로 해야 할 방송 언론사업으로서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지상파 재송신 플랫폼에게 부여한 종편의 의무편성, 이것은 KBS, EBS 공영방송에만 주어진 것으로 혜택도 아니고 그 공영성·공공성·공익성을 국민들에게 무료 보편 서비스로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종편을 의무편성 해 놓은 것은 정말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특혜, 사회적 혜택, 또 거대 언론사 일원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고 사업을 해 왔고 지금 급성장하고 있으면, 3년이 지났으면 지금쯤은 최소한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방송사업자로서의 회비, 분담금으로 상징적으로라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2014년 재승인한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로서 회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금년에 시행하지 않으면 정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다시 논란과 비난과 질책 속에 휩싸일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해 놓고 1년 뒤에 하자, 3년 뒤에 하자? 다시 거론하기 싫지만 지난번 SKT 체재를 의결해 놓고 집행시키는 나중에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판과 질책을 받았습니까? 정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오늘 <제1안>으로 의결하고 당장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세 분은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인용과 관련해서 이것은 수치로 나오는 부분이어서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편 4사의 매출액이 32%정도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의 대상이 되는 방송광고매출액은 2014년에 2013년 대비 3%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회의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의견을 말씀 안하신 것 같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그리고 IPTV법에 따라 그동안 신규 방송사업자들을 인허가

하면서 최초 3년간은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그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신규사업자에 대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를 유예하는 것은 이미 방송시장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와의 경쟁을 고려하고 또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로서는 예측가능한 정책 수행을 통해 사업자들이 투자계획 수립을 용이하도록 그동안 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에게 방발기금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동안 바로 기금을 징수하지 않고 추가로 3년간 징수율 0%를 고시함으로써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그리고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등 플랫폼사업자들은 최소한 6년 이상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또는 유예를 받아서 방송시장에 안착하고 안정적인 방송사업을 유지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투자 그리고 디지털전환 이런 것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1년에 방송사업을 시작한 종편 그리고 보도PP사업자에 대해서 방발기금 징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들이 지난 '14년도에 재승인을 받으면서 최초 3년간의 방발기금 유예기간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과거 방통위 또는 방송위원회 사례를 고려할 때 올해부터 만약에 방발기금을 징수한다면 이는 그동안 방송 승인 이후 최초 3년 면제 그리고 추후 3년 유예해 준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나 예측가능성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2, 3년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지 못했고 이로 인해 방송광고시장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종편이나 보도채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지금 방송시장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방발기금을 종편과 보도에 징수할 경우에 해당 사업자들이 중요한 제작비 축소, 그 결과로 해서 또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는 어려움이, 또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문제의 5개 사업자에 대해서 여느 여타 방송사업자와 같이 최초 승인 후 3년에 이어서 재승인기간인 3년을 포함해서 6년, 즉 2017년까지는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종합유선방송사나 위성방송, 지상파 DMB, IPTV 등 신규진입에 따른 적자시 분담금을 0% 유지했던 사례 등을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위성방송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최초 허가기간 3년 동안 면제가 됐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0% 고시를 유지했습니다. 또 IPTV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초 허가 3년 기간 동안 면제가 됐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0% 고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파DMB는 적자 등을 고려해서 지난 2006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계속 면제상태에 있습니다. 0% 상태에 있습니다. 종편과 보도채널은 제 생각에는 최초 승인 그리고 재승인기간이 끝나는 2017년 그 이후에는 재정적으로 적자상황이라 하더라도 징수한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사업자들에게 미리 기금징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자로부터도 신뢰를 받아야 하고 국민으로부터도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사업자들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또 집행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종편의 일부 사업자들을 보면 자본잠식이 많이 이루어진 곳은 73%까지 자본결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보도TV 뉴스채널 중 또 하나는 67%, 거의 2/3 자본잠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채널들이 25% 가까이 자본잠식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적자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SO나 위성방송, IPTV..., IPTV는 지금

현재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이 사업자들도 6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최소 6년, SO는 9년 이상 유예가 됐습니다. 이렇게 유예를 한 이후에 흑자상태로 전환이 되고 난 뒤부터 방발기금 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종편과 보도채널에도 그런 정도의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하는데, 그러나 종편·보도에 대한 또 특혜 시비도 있고 하니 제 판단에는 적어도 그동안 기존에 해 왔던 모든 방송사업자들과 같이 최소한 6년, 그러니까 허가 승인기간 3년 그리고 재승인 기간을 3년 추가해서 6년은 기본적으로 다 면제 내지 유예해 온 그 과거 전례를 비추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간단히 하실 줄 알고 간단히 했는데 제가 한참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간단히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면제, 유예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나 유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였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법조항입니까?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지난번에는 IPTV와 위성TV 3년간 면제되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었고, 면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 고삼석 상임위원

- 유예는요?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유예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없지요?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없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 허원제 부위원장

- 제가 유예라고 한 것은 0%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3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사무국에서 이 안을 제시할 때는 논리적인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면제의 법적근거요. 지금 개정된 시행령이나….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현재 개정된 시행령에 면제규정은 일정 부분 소규모 적자 사업자와….

○ **고삼석 상임위원**

- 몇 조 몇 항이지요? 이것이 종편에 해당됩니까? 짧게 할게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앞서 위원님들 말씀 중에 ‘법적근거가 없다’ 내지는 ‘입법취지에 안 맞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최성호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보면 2개 안 내지는 세부적으로 보면 3개 안이 다 법체계나 입법취지에 다 맞는 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3개 안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표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징수율과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징수한다, 상위법령대로 한다 이것은 다 똑같은 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을 또 안 한다든가, 아니면 입법취지를 몰각한다든가…, 지금 고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면제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관련된 법률이나 시행령에 유예라는 말이 없어도 부칙규정에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명시적인 면제근거와 상관없이 저희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부칙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년 뒤부터 징수하느냐, 3년 뒤부터 징수하느냐 그것은 우리 고시 개정안 부칙에 반영하면 되는 문제이지, 상위 법령에 면제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말씀 중에 최종한데 유예 적용시기를 규정하는데 어디에 규정하자는 것입니까? 고시에 규정하자는 것입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고시의 부칙에 규정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면제의 근거규정이 시행령에 없는데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법은 당장 부과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법률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차등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징수율을 6% 이하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면제와 경감규정을 뒀고 징수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작년 논의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아까 물어본 것은 제가 작년..., 제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그 0%는 면제나 유예가 아닙니다. 작년에 0% 부과였지요. 0%를 부과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거든요.

○ 이기주 상임위원

- 0% 부과규정이 있었다고요?

○ 고삼석 상임위원

- 0%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 고삼석 상임위원

- 유예가 아닙니다. 유예나 면제가 아니고, 법적으로는 유예나 면제가 안 되기 때문에 0% 부과하겠다고 의결한 것이지요. 그런데 개정된 시행령은 그것을 없앤 것이 아닙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지난해까지도 징수율 0%를 부과한다는 것은 법률이나 시행령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법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시행령이 잘못됐고, 그래서 시행령을 고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었습니다. 그것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가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무조건 부과하라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즉시 부과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제시한 안은 0%를 부과하는 안이 아니고 0.5%를 부과하는 안입니다. 다만,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유예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기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금년을 넘어가는 데도 유예가 가능합니까?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감경이나 유예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저와 계속 토론하실 건가요? 아까 간단하게 확인만 한다고 하시더니, 저는 징수율을….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실 차례니까 말씀을 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어쨌든 징수율은 법률에서 0부터 6%까지 정해놓았고, 고시에서 구체적인 징수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징수율은 0.5%로 하고 시행시기는 부칙에 내년부터 하자' 이런 안이기 때문에 지금 고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징수율 가지고 0.5%다, 1%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어쨌든 내년부터 1차년도를 0.5%로 하고, 그다음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상황, 방송시장상황, 그리고 개별방송사업자들의 경영상황을 고려해서 그 이후에는 그런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내년부터 납부하자는 것은 금년 회계연도에는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결과적으로 징수를 안 하는 것과 면제와는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지난해 발생한 매출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징수율을 정하면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또 있는 것이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행령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법제처에 한 번 의견을 물어볼까요?

○ 이기주 상임위원

- 법제처에 지금 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안을 내면 규제개혁 심사 받고 또 여기에 나온 것처럼 기재부의 부담금 심의를 받으면서, 아마 저희가 오늘 논의해서 어떤 안이 나오든 간에 관계기관의 전문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해가 안 됩니다.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고시에 그것도 부칙에 규정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 말씀하셨으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하면 고삼석 위원님과 김재홍 위원님은 <제1안>을 0.5%가 아닌 1%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셨고, 그다음에 이기주 위원님께서 <제2-1안>을 지지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님께서 <제2-2안>을 지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지금 이기주 위원님과 고삼석 위원님께서 서로 논의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보다 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징수하고자 했던 것이지, 그 표현 자체에 의해서 과거에는 개정 전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하면 징수율 0%가 가능했는데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하면 징수율 0%가 법리적으로 안 되도록 이렇게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입법취지를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고려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 6월 22일에 시행령이 공포·시행되고 있지요?

○ 신영규 재정팀장

- 공포, 시행됐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2014년 매출액에 대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는데, 그러면 징수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6월 22일 이전에 저희가 이 고시를 개정했으면 2014년에 대해 적용을 못 하고, 그다음에 6월 22일 이후에 하면 적용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2014년의 매출에 대해서는 새로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에 지상파에 대한 징수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각 구간별로 0.3%를 정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신영규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와 같이 하면 지상파들이 2013년 매출액에 대해서 2014년에 납부했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비교하면, 이번에 정한 징수율에 따라서 2014년 매출액에 대해서 적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변화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에는 2013년의 매출에 대한 분담금 총액이 720억원이었고, 지금 저희가 변경된 체계에 따라서 기본징수율을 소수점 아래 값을 0.3%로 정해서 징수하면 2014년 매출에 대한 분담금이 603억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줄어드는 것을 알면서도 기본징수율을 0.3%로 정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 신영규 재정팀장

-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방송시장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반영해서 바뀐 제도가 시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전 제도보다는 불리해지지 않도록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0.3%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편이나 보도PP의 경우에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과거에 논의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또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의 의미를 살려서 종합편성PP와 보도PP에 대해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그 비율을 0.5%로 해서 고시에 정하는 것이지요?

○ 신영규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만,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이 6월 22일에 개정되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인 방송시장의 상황, 다시 말씀드려서 지상파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0억원 가까이 징수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종편과 보도PP는 계속 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혹시 종편과 보도PP 총 적자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2014년 총 적자규모가 1,109억원이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1,109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징수하는 원칙을 저희가 고시에 정하되, 징수를 <제2-1안>은 1년 유예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이 된 2015년분부터 징수를 적용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2-2안>은 과거의 SO나 위성 그다음에 IPTV에 적용됐던 전례를 고려해서 6년 동안 방발기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꼭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미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2-1

안> 징수율 0.5%로 해서 이번에 방송발전기금을 종편과 보도PP도 납부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부칙에 의해서 2014년 매출액에 대해서는 종전에 있던 고시 그대로 적용이 되고, 2015년분부터 개정된 고시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께 몇 가지 여쭙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입장을 정하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여쭙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행령 개정이라는 것은 법적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즉, 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서 금년부터 즉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자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서는 작년에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작년 5월 23일입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비율을 결정할 때 올라왔던 안건이 종편 및 보도PP에 대해서 <제1안>이 현행 0% 유지, <제2안>이 분담금 징수입니다. 그리고 그 징수비율도 최초 징수율 사례를 고려하여 1%로 하겠다는 안이었습시다. 그때도 지금과 같은 논쟁이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올해까지는 <제1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부터는 <제2안>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의 마무리 발언이 아니셨던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뒤에 다른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이런 제도를 연구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는 취지가 어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다시 국회 속기록을 뒤져 봤습니다. 방통위가 종편·보도PP에 대해서 방통발전기금 징수를 면제해 주고 난 직후에 열렸던 작년 7월 10일 국회 미방위 상임위에서 야당 위원들께서 법적근거 없는 종편PP의 방통기금 면제는 특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적은 타당하다. 법적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방통발전기금 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원칙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한해서는 3년차까지 면제해 준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따르고 내년부터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원칙을 정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당 의원께서 정리발언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검토가 되어 종편도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십니다. “신속히 검토해서 올해 내로 시행령까지 다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 저는 이 의미를 위원장님께서 ‘금년부터, 2015년부터 종편과 보도PP에 대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으셨지만 행간에 읽히기에는 ‘2015년부터는 종편과 보도PP에 대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독해력, 이해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글썬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하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우선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종전에 종편·보도PP에 대해서 면제했던 것은 아닙니다. 징수율 0%를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게 됐는데 만약에 늦어지지 않고 그 당시에 한두 달 내 금방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체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완전히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편·보도PP에 대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법률적인 사항 등을 고려해서 징수의 시행을 2015년 매출 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징수가 유예가 됨에 따라서 2014년 매출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정해놓은 고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작년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또는 국회에서 제가 답변 드렸던 부분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아주 오랫동안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많이 됐고, 또 사무처에서도 많이 검토한 것인데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정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 매출분에 대한 금년도 분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데드라인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보고안을 접수해도 앞으로 절차가 행정예고, 의견수렴도 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도 받아야 하고, 또 기재부의 부담금 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약에 끝까지 이렇게 토론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외부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중간적인 안이라고 생각되는 <제2-1안>으로 일단 접수해서 앞으로 한두 달 간에 다른 관련되는 기관이나 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또 논의를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기주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종편PP의 경우 특혜는 당연한 것이고, 공정방송 의무준수나 방통기금 납부 등 공적책무는 불필요한 것, 혹은 거추장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종편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의 효력은 금년부터 즉시 발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상태에서 1년 동안 유예나 면제하는 것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차례대로 어느 정도 의견진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근거 설명은 충분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징수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1년을 유예하자, 또는 3년 뒤에 하자.... 1년을 유예한다는 결정은 징수원칙을 결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또 앞으로 1년 내내 비판과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국민 여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그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SO, 위성방송, IPTV에 대한 면제, 유예 이것은 그러니까 플랫폼인데, 말하자면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는 아닌 것이지요. 말하자면 다른 방송을 재송신하고 편성하는 것이니까 그렇고요. 종편·보도PP는 그것은 정말 자체제작을 통해서 정치·사회적인 위상과 영향력이 그것과는 비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SO, 위성, IPTV의 특혜 그것은 종편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종편에 대한 시청자들, 국민들, 시민사회의 눈입니다. 얼마 전에 종편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했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재송신 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를 부여했고 권고사항을 각 사별로 했고, 그것을 중간점검해 보니까 역주행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사위원회가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말, 편파방송이 지난 1년 동안 그 전에 비해서 2배, 3배, 몇 배 늘어났습니다. 또 최근에는 종편들의 불법 광고영업도 많은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규제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종편에 대한 의구심, 의혹의 시선, 국민들의 시선은 '종편·보도PP를 왜 정부가 이렇게 비호하는 것이냐? 특혜를 주는 것이냐?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앞장서서 그런 것이냐?' 하는 질책, 비판의 눈길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같이 논의하고 토론해서 제가 중론에 따라가거나 제가 승복하거나 아닌 말로 다수 의사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면 공동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함께 논의하기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리고 또 거듭 말씀드리면 저는 금년부터는 원칙대로 징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견뎌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에 따라서 징수율과 즉각 시행을 오늘 여기에서 정하고, 보고를 접수받고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다들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만 말씀을 한 번밖에 안 하신 것 같아서 혹시 말씀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저도 공평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그럼 한 번 더 말씀하시고요.

○ 허원제 부위원장

- 분담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조항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그리고 '그 기금의 조성',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체별로 분담금에 대한 항목이 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김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방

송사업자들의 방송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분담금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말이라든지 이런 방송이 있으면 그것은 또 그것을 제재하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매길 것은 과징금을 매기고 허가조건에 달고 또 부대조건도 달고, 권고사항도 달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규제수단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이지,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분담금을 그 내용과 연결시키는 것은 결코 법 취지의 내용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지금 종편과 보도PP의 분담금 징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도·종편PP가 3년간 2012년도에 2,755억원, 2013년에 2,200억원, 2014년에 1,110억원 이렇게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해, 지지난해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 광고시장도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종편과 보도PP는 다 우리나라 방송의 콘텐츠, 방송시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우리가 이 사업자들도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부는 이런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을 가지고 예측가능한 것을 가지고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사업자들이 지금도 누적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과거의 전례와는 다르게 당장 징수하도록 제도를 급작스럽게 변경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짧게 말씀하시지요. 한도 끝도 없이 토론할 수는 없으니까요.

○ 김재홍 상임위원

- 방발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발기금을 안 내는 방송사가 방발기금의 지원을 받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머리와 제 로직(logic),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체계로는 그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다른 데도….

○ 김재홍 상임위원

- 방발기금을 내야 방발기금을 수혜받는 방송사업자 그룹의 회원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사회적 정의로 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신들이 한 푼도 내지 않는 방발기금 중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로 계속 논란에 휩싸이기보다는 중편 입장에서 봐도 빨리 내버리고 몇몇한 방송언론사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몇 푼 안 되는 것입니다. 서민들한테는 큰 돈이겠지만 방송사업자들의 매출규모나..., 적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손익, 회계를 어떻게 하는지 분석해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그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의 비전이나 미래로 봤을 때 어느 지상과 못지않게 중편은 사업성이 있다고 자신들도 판단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불필요한 논란, 사회적 소모적인 논란을 또 야기시키지 말고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원칙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제가 사실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그동안 0% 면제를 받아온 IPTV와 위성방송사업자들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이 없습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말씀이신가요?

○ **허원제 부위원장**

- 아니, SO도 있고 그동안에 면제를 받아온 많은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예.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분들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은 것이 없습니까?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주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징수해서 지금 PP들, 그러니까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한테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사실 그쪽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 신영규 재정팀장

- 사실 전혀 지원받은 게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팩트 확인을 못 했고,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하나의 참고사항, 고려사항이고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논의가 충분히 된 것 같고, 그런데 입장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제 입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분담금 징수율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방송 운영의 공공성입니다. 두 번째가 사업자의 재정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익규모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방송 운영에 관한 공공성은 KBS와 EBS의 경우에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편PP의 경우에는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감해 주어야 하거나 면제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 달 초에 보고받았다시피 2014년도 종합편성PP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결과, 콘텐츠 투자 계획 미이행, 오보·막말방송·편파방송 이러한 것들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종편PP들이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은 지금 초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방송을 하는 종편에게 계속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면제해 주거나 법적근거도 없이 유예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반대하는 입장을 떠나서 결정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의미에서 저는 안건을 수용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참여 안 하려고요. 제 의견은 다 냈지 않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회의 안 끝났는데, 의견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고 왜 그냥 나가십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아니,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마무리를 못 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보고안건을 가지고 그렇게 일어나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접수하는 것을 가지고….

○ 고삼석 이상임위원

- 접수하는데 동의를 못 합니다.

(고삼석 상임위원 퇴장)

○ 김재홍 상임위원

-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잘못 결정하면 저희의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고삼석위원의 입장을 저도 충분히 공유하고 지지하며, 아까 말씀드렸던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하거나 서로 양보하거나 해서 만들어진 결정이면 거기에 대한 비판, 비난은 감수하고 공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대한 책임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입장이 전혀 변경, 수렴되지 않고 있어 저도 함께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안건은, 별로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그냥 간단히 결정해서 방통위 내부의 논란과 또 우리의 사회적 소모적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저도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김재홍 상임위원 퇴장)

○ 최성준 위원장

- 두 분 위원님께서 의견은 말씀하셨지만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퇴장을 하시는 이유를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사실은 지난주에도 저희 상임위원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오늘 회의 전에도 1시간 넘게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합의된 하나의 의견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서, 그리고 또 고시가 8월 31일까지 공표가 되어야지요?

○ 신영규 재정팀장

- 개정이 되어야 공포가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만일 8월 31일까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저희가 8월 말까지 사업자들에게 납부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 만약에 개정이 안 되면 기존 고시에 따라 8월 말까지 저희가 사업자에게 기존 징수율에 따라 납부통보를 해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8월 31일 전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이기주 위원님께서서는 <제2-1안> 종편·보도PP에 대해서 방발기금을 징수하되, 2014년 매출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고시대로 가고, 2015년 매출액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을 두는 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위원장님께서서는 <제2-2안> 다른 내용은 다 같습니다만 그것이 2017년 매출액부터...

○ 신영규 재정팀장

- '17년 매출에 대해서 '18년에 부과하는...

○ 최성준 위원장

- 2017년 매출액부터 2018년에 부과하는 <제2-2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퇴장하신 상태에서 이 안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려면 저희 전체 다섯 분의 과반수 의견이 있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논의 결과 등등을 종합해서 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에 관한 고시가 8월 31일까지는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임을 감안해서 의견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수는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우리가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되지요? 재적의 과반입니까?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예,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저 개인적으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제 소신에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개인적 소신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철회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향후 행정절차상 8월 말까지 결정을 해서 8월 전에는 사업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시한상의 문제가 있으니 일단 제가 한 걸음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다시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고시에 대해서 내년에도 다시 논의해서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든가 하는 방안은 가능하겠지만,

일단 올해 징수율을 정하고 부칙으로 단지 시행만 유예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부과를 한다는 취지가 고시에 명기가 되고 그런 취지의 효과가 내년까지 지속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징수를 한다는 자체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징수율에 있어서는 매출액 정도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게 되면 퍼센티지는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을 하면 다시 논의할 수가 없습니까?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논의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런 정신 하에 봤을 때는 이렇게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어쨌든 일단 제가 <제2-1안>에 동의를 하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3년, 플러스 3년, 총 6년을 유예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소신은 계속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참고로 부위원장님, 앞으로 국조실 규제위 규제심사나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의안 자체가 변할 수는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주장해 오셨고, 또 지금 마무리 정리해 주신 그 부분을 명확히 남겨서 부위원장님의 의사가 어떠한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제2-1안>을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주 위원님도 <제2-1안>을 지지하시는 것이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보고안건>은 두 분이 퇴장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과반수가 같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다른 두 부분은 다 원안대로 접수하고,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징수율 부분에 관해서는 <제2-1안>, 즉 징수율을 0.5%로 정하되, 2014년 매출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대로 적용되고 2015년 매출액, 즉 1년 후부터는 이 고시가 적용되는 것으로 부칙을 두는 안입니다. <제2-1안>을 선택해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7월 9일 목요일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8시 40분 폐회 】